제 1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고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11월0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소**	소** 1955-10-26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	재등록
최**	최** 1968-11-22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	재등록
김**	김** 1974-12-25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	재등록
박**	박** 1980-07-10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이준 문의전화 : 061-540-6622~3)

2016년 10월 27일

고군면장 인

제 1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고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11월0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소**	소** 1955-10-26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	재등록
최**	최** 1968-11-22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	재등록
김**	김** 1974-12-25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	재등록
박**	박** 1980-07-10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이준 문의전화 : 061-540-6622~3)

2016년 10월 27일

고군면장 원